<table>
<tr><td colspan="2">사건명</td><td colspan="4">Technology Patents v. T-Mobile</td></tr>
<tr><td colspan="2">소의 종류</td><td colspan="2">특허침해소송 항소</td><td>권리별</td><td>특허</td></tr>
<tr><td colspan="2">원고</td><td colspan="4">(항소인) Technology Patents LLC</td></tr>
<tr><td colspan="2">피고</td><td colspan="4">(피항소인) T-Mobile(UK) Ltd.; Advanced Info Service PLC.; America Movil; Belgacom Mobile S.A. et al.
(소송참가인) Motirola Mobility, Inc.</td></tr>
<tr><td colspan="2">권리사항</td><td colspan="4">U.S.P. 6,646,542 (등록일 : 2003.11.11, 출원일 : 1996.11.19)
“Global paging system using packet-switched digital data network and remote country designation”
U.S.P. RE39,870 (등록일 : 2007.10.09, 출원일 : 2005.12.16)
“Global paging system using packet-switched digital data network and remote country designation”</td></tr>
<tr><td rowspan="3">원심</td><td>법원</td><td>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td><td>사건번호</td><td colspan="2">07-CV-3012</td></tr>
<tr><td></td><td></td><td>소송일</td><td colspan="2">2007.11.08.</td></tr>
<tr><td>판결</td><td colspan="4">일부 피고에 대한 각하, 비침해 판결</td></tr>
<tr><td>요지</td><td colspan="4">지방법원은 해외통신회사들에 대하여는 인적관할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중간판결에서 소프트웨어 및 미국내 통신회사들에 대하여 비침해로 판결하였다.</td></tr>
<tr><td rowspan="4">항소심</td><td>법원</td><td>CAFC</td><td>판례분석</td><td colspan="2">□ / □</td></tr>
<tr><td>사건번호</td><td>No. 11-1581</td><td>판결일</td><td colspan="2">2012.10.17.</td></tr>
<tr><td>판결</td><td colspan="4">원심 확정, 부분파기 및 재심리 명령</td></tr>
<tr><td>요지</td><td colspan="4">CAFC는 해외통신회사들에 대한 인적관할 흠결여부, 청구항 해석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한 침해문제 및 미국내 통신회사들의 침해문제를 심리하였고,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원심을 확정하였으나, 소프트웨어회사들의 공동침해 관련하여서는 부분 확정, 부분파기 및 재심리를 명하였다.</td></tr>
<tr><td colspan="2">사건의 개요</td><td colspan="4">원고(Technology Patents: TPL)는 NPE로서 2007년11월 8일 100여개이상의 미국 및 해외업체들을 특허침해로 제소하였다. 피고들은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ⅰ) 미국 내 통신회사(T-Mobile, AT&T, Sprint 등), ⅱ) 소프트웨어 회사(Microsoft, Yahoo 등), ⅲ) 해외 통신회사(Vodaphone, 등)들이다. 소송특허는 2건이었으나, ‘542특허는 나중에 철회하였고, ‘870특허만 소송에서 다투게 되었다.
지방법원은 2008년 8월 해외통신회사들에 대하여는 메릴랜드주에서 충분한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s)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각하하였다.
2010년 8월 법원은 청구항 해석을 결정하였고, 수 주후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하여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침해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나 원고가 피고들의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비침해로 중간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1년 8월 법원은 미국내의 통신회사들도 문언적으로 청구항과 매칭되지 않고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비침해로 판결하였다.
CAFC는 원심의 특허청구항 해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심 판</td></tr>
</table>

	결을 확정하였지만, 소프트웨어회사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은 일부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하였다. 여기서 원심은 특허청구항 해석에 기초하여 공동 또는 분할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최종사용자들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CAFC는 피고가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물리적으로 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 사건 특허의 경우 일부 청구항은 다수의 행위자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C) Oneness Co. Ltd. 2012.10.30.